

남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0
----------	-----

발의연월일 : 2024. 1. 16.

발의자 : 김상수, 조성대, 이정애,
이진환, 박경원, 김동훈,
원주영, 김지훈(민)

1. 제안 이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 및 지원함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이바지하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운영 지원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민간활동 장려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마. 보행안전지도사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관련법령 : 덧붙임

남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안전지도사”란 남양주시장이 정한 지역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보행안전지도사 육성·운영 지원) ①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이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운영 및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민간활동 장려 등) 시장은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의 활동을 장려하고 보행안전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운영에 관한 비용 지원

-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이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4조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운영 지원)
- 시장은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의 활동을 장려하고 보행안전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안 제6조 민간활동 장려 등)
-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안 제6조 재정지원)
-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안 제6조 재정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운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자 또는 보행안전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시됨
- 다만,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는 조례 제정에 따라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 마련되어야 추계 가능한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는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교통국 교통정책과장 박진범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

- ① 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관할 구역 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가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또는 장소를 방문하여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② 시장등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